



보건복지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

1. 관련 : 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조정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20915호, 2022.6.29.)
2.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발생한 외래진료비용(재택치료와 대면 진료) 및 원외처방전 관련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종료에 따라,
 -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*의 외래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 - * '22.7.11.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환자에게 적용
 - **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'22.7.25.부터 가능
3. '22.7.13.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 에 따라 재택치료 의료기관주도형, 외래 혈액투석환자, 경구치료제 단독 원외처방 등 추가 청구방법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**송서현** 보건사무관 **조영대** 보험급여과장 **정성훈** 전결 2022. 7. 8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3457 (2022. 7. 8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